

"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 시달

1.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22. 3. 28.)
2.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을 의결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시달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 1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지방관서(지역협력부서), 고객상담센터소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한국고용정보원장,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대한건설협회장, 외국인상담센터장,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주무관	박순종	서기관	오지영	서기관	전결 2022.3.28. 김문실
-----	------------	-----	------------	-----	-----------------------------

협조자

시행 외국인력담당관-1112 (2022. 3. 28.)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7층(어진동 581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151 팩스번호 044-202-8027 / nhlpark@korea.kr / 대국민 공개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